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전자장치 부착명령 시 접근 금지 병과 간주 등 〉
■ 전현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464호)

2026. 5.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혜 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V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내용	2
2.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종류와 그 부과	7
3.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8
4. 전자장치 부착명령 시 접근 금지 병과 간주	11
5. 형 집행이 종료된 스토킹범죄자 대상 보호관찰 부과	1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전현회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2025. 8. 28.
3. 회 부 일: 2025. 8.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복성과 집착성이 강한 스토킹범죄는 재범 위험이 높아 집행유예 기간 중인 대상자 외 만기 출소한 피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함.

그러나 현행법은 집행유예의 경우에만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만기 출소한 피의자의 재범 방지에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상황임. 또한,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조치 기간과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상이할 경우, 법원의 결정문을 통해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경찰이 연장 신청을 누락하는 등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제기됨.

이에 스토킹범죄를 범하고 형의 집행이 종료한 사람 가운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호관찰명령을 받도록 하여 스토킹범죄 재발을 예방하고,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신청 시 접근금지 조치가 자동 병과 또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자 보호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등).

III. 검토의견

1.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법원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 장치의 부착을 결정하는 경우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역시 병과된 것으로 간주하고, 스토킹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임.¹⁾

현행	개정안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 ----- ----- ----- ----- ----- ----- ----- ----- <u>. 이 경우 제3호 의2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u> <u>의 부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u> <u>제2호의 접근 금지 조치가 병</u>

1) 한편, 안 제17조의5는 그 제목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그 내용에 비추어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1. ~ 4. (생략) ② ~ ⑦ (생략) <u><신설></u> <u><신설></u>	<u>과되거나 그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u>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u>제3장 보호관찰</u> <u>제17조의5(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u> <u>검사는 스토킹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 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스토킹범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③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소속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을 받을 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의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되, 보호

현행	개정안
<신설>	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7조의6(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①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증대한 경우에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17조의5제3항에 따른 5년을 초과하여 보호관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준수사항은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설명하고 서면으로도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제17조의7(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근무 예정지, 교우(交友) 관계, 그 밖에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출소 전에 미리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장 벌칙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 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8(보호관찰의 종료) 「보 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보 호관찰 대상자의 관찰성적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 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 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 다. 제4장 벌칙

2. 현행법상 잠정조치의 종류와 그 부과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조치,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등의 피해자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 이중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거나 스토킹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루어지는 피해자 보호조치로서 그 종류에는 서면 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이 포함됨(제9조제1항).²⁾

○ 이러한 잠정조치는 병과할 수 있으며, 각 잠정조치의 기간은 접근 금지 또는 전자장치 부착의 경우에는 3개월,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경우에는 1개월을 상한으로 하되,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은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음(제9조제2항·제7항).³⁾

2) 스토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

3) 스토킹처벌법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併科)할 수 있다.

3. 현행법상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 한편,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은 스토킹처벌법 외에 「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음(「형법」 제59조의2, 제62조의2).⁴⁾

- 보호관찰이 내려진 사람에 대하여는 보호관찰법에 따라 각종 준수사항 등이 부과됨(보호관찰법 제32조).⁵⁾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감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감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5) 보호관찰법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주거지에 상주(常住)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2.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善行)을 하며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3.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4. 주거를 이전(移轉)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 또한, 검사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음(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제21조의3).⁶⁾

-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라 각각 준수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6)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21조의3(보호관찰명령의 판결) ① 법원은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

- 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형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이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의 준수사항에 대하여는 전자장치부착법이 규정하고 있음(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4 및 제9조의2).⁷⁾

7)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4(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4호의 준수사항은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과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삭제 <2010. 4. 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1. 19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준수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 제1항제3호의 준수사항을 포함할 것

4. 전자장치 부착명령 시 접근 금지 병과 간주

□ 안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잠정조치로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 100m 이내 접근 금지가 병과 또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게 됨.

○ 이때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따라 100m 이내 접근 금지가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경우란, 이미 잠정조치로 100m 이내 접근 금지가 부과된 경우라고 할 것임.

- 다만, 안 제9조제1항은 기존 100m 이내 접근 금지가 얼마 동안 연장되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데, 병과되는 경우와의 균형, 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전자장치부착명령의 기간과 접근금지명령의 기간 간 차이만큼 연장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안 제9조제1항과 같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100m 이내 접근 금지의 병과 등을 간주할 것인지는, 스토킹행위자의 위험성,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스토킹행위·범죄에서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100m 이내 접근 금지 제도 각각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5. 형 집행이 종료된 스토킹범죄자 대상 보호관찰 부과

□ 안 제17조의5는 스토킹범죄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의무적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된 때부터 개시되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안 제17조의5의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61조의 내용과 동일한 것임.⁸⁾

○ 안 제17조의5제1항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스토킹범죄자에 대하여 검사가 의무적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8) 청소년성보호법

제61조(보호관찰) ①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소속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을 받을 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의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기산한다.

- 전자장치부착법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스톱킹범죄자에 대하여 검사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개시되는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⁹⁾ 안 제17조의5제1항은 이와 달리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음.

- 안 제17조의5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스톱킹범죄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스톱킹범죄자가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9)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스톱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스톱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안 제17조의5제4항은 보호관찰명령을 위한 보호관찰소의 조사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은 보호관찰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각각 보호관찰법 및 전자장치부착법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7조의5제4항은 보호관찰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 동기 및 재범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호관찰법 제19조·제19조의2,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제6조 등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¹⁰⁾

10) 다만, 보호관찰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는 안 제17조의5제4항처럼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요구·의뢰하는 경우인 반면,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및 제6조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라는 점에 차이가 있음.

보호관찰법

제19조(판결 전 조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59조의2 및 제62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감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所在地)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환경, 교우관계, 가족 상황,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제19조의2(결정 전 조사) ① 법원은 「소년법」 제12조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소년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소년의品行,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생략)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제8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제6조(조사) ①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 안 제17조의5제5항은 보호관찰기간의 기산일이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된 날임을 밝히고 있는데, 보호관찰법 제29조,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5 등도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¹¹⁾

○ 안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8까지는 스토킹범죄자 대상 보호관찰의 도입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안 제17조의6은 보호관찰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연장될 수 있음을, 안 제17조의7은 교정시설 등에 수감 중인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거주 및 근무 예정지 등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여됨을, 안 제17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호관찰심의위원회가 보호관찰을 종료시킬 수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함.

- 안 제17조의6부터 제17조의8까지는 청소년성보호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내용과 동일함.¹²⁾

11) 다만, 보호관찰법 제29조는 형 집행 후의 보호관찰에 대한 기산일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보호관찰법

제29조(보호관찰의 개시 및 신고) ① 보호관찰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가석방·임시퇴원된 때부터 시작된다.

② (생략)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5(보호관찰명령의 집행) 보호관찰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12) **청소년성보호법**

제6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①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증대한 경우에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61조제3항에 따른 5년을 초과

- 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7은 연장되는 기간의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안 제17조의6과 차이가 있음.¹³⁾
- 안 제17조의8은 보호관찰대상자의 관찰성적이 양호한 경우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즉시 보호관찰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형의 집행이 종료한 후에 보호관찰을 받는 스토킹범죄자에게 적용되는 전자장치부착법은 관찰성적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하고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하면 보호관찰을 종료시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¹⁴⁾

하여 보호관찰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준수사항은 재판장이 재판정에서 설명하고 서면으로도 알려 주어야 한다.

제63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①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의 거주 예정지, 근무 예정지, 교우(交友) 관계, 그 밖에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출소 전에 미리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호관찰 대상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지, 직업 등 보호관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호관찰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4조(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찰성적이 양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13)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7(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등) ①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4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21조의6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기간의 연장

2.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4) 전자장치부착법

제20조(부착명령 집행을 종료)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 이처럼 스토킹범죄자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이후부터 보호관찰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7조의5부터 제17조의8까지의 규정에 대하여는 현행 규정인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 등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형 집행 종료 이후의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는 스토킹범죄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로 다른 범죄 사이에서 책임과 형벌 간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범죄와 달리 스토킹범죄에 대하여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3. 삭제 <2008. 6. 13.>

4.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제21조의8(준용규정)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제5조제6항·제8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 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 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

문 의 처
02-6788-5073